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2019. 12



🕝 환경부

목 차

제1징) 의료폐기물	개요		••••••	··· 1
1.1	의료폐기물 정의				···· 1
1.2	의료폐기물 발생	뱅기관 ······			···· 1
1.3	의료폐기물 종류	<u> </u>			2
1.4	의료폐기물 배출	<u> </u> 현황			3
1.5	의료폐기물 처리	개요			3
제2징	망 의료폐기물	배출 및 보관	•••••	••••••	··· 4
2.1	전용용기 사용…				4
2.2	보관기준 및 방법	법			···· 7
제3징	망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 10
3.1	분리배출 필요성	ţ			·· 10
3.2	분리배출 방법…				·· 11
제4징	: 기타 의료펴	ᅨ기물 처리 등	••••••	••••••	· 16
4.1	처리계획 확인…				·· 16
4.2	공동처리기구 운	<u> </u> 영			·· 18
4.3	수집·운반 개요·				·· 18
4.4	처리 개요				·· 19
4.5	RFID 개요				20
볔천	자료 : 의료폐	기물 분류 관련	· I 집의응단 사례	•••••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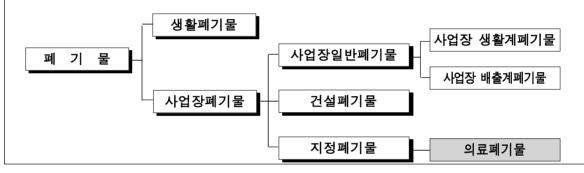
1장 의료폐기물 개요

1.1 의료폐기물 정의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함

[참고 1 : 폐기물 분류 체계]



1.2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시행규칙 별표 3)

- 1.「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2.「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4.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
- 5.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에 따른 **동물** 검역기관
- 6.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 8.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말한다)
-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 12.「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 13. 「국군의무사령부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 14.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15.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 16.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1.3 의료폐기물 종류(시행령 별표 2)

1.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 가.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 나.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다.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 라.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3.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 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 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 3.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는 다음 각 목의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 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 나.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

1.4 의료폐기물 배출 현황

- 매년 증가추세이며 '18년은 226천톤으로 '14년 대비 43.9% 급증
 - 인구 고령화, 실버산업 발달 등으로 의료시설 및 의료폐기물 발생량 지속 증가 예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57천톤	173천톤	191천톤	207천톤	226천톤

비고1 : 올바로시스템 인계량을 기준으로 작성

비고2 : 수질오염방지지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액체 상태 폐기물은 제외

○ (종류별) 일반의료폐기물이 176천톤으로 약 78% 차지(*18년 기준)

합계	일반의료	위해우려	격리의료
226(천톤)	176	46	4

1.5 의료폐기물 처리 개요

○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로 배출, 밀폐 상태로 보관, 전용 차량으로 수집·운반되어 전용 소각시설(또는 멸균시설)에서 처분



-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RFID(무선주파수 인식방법)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의료 폐기물 발생~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
- 현재 전국 13개 소각 처분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운영 중

구분	소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
개소 수	13(기)	3	3	2	5	_

2.1 전용용기 사용

가. 의료폐기물

- 의료폐기물은 발생했을 때, 즉 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종류별로 적합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
- 봉투형 용기 / 상자형 용기(골판지류, 합성수지류)

구분	용기 사진	해당 의료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 용기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치아 제외), 손상성폐기물, 액체상태 폐 기물
봉투형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 용기	(1) (1) (1) (1) (1) (1) (1) (1) (1) (1)	그 밖의 의료폐기물

○ 전용용기의 바깥쪽에 도형과 취급시 주의사항 표시하고, 도형색상은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상이

< 도형 및 색상 >



의료폐기물 종류	도형색상		
격리의료폐기물	붉은	음 색	
위해의료폐기물(재활용하는 태반은 제외) 및	봉투형 용기	검정색	
일반의료폐기물	상자형 용기	노란색	
재활용하는 태반	녹	색	

※ (도형색상)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노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할 때에는 붉은색으로 표시

< 취급 시 주의사항 >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 ※ (사용개시 연월일)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기재. 다만,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 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음 (다만, 보관기한 적용시 봉투형 용기에 기재된 날짜가 기준)
- 사용 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관리
-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고,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재사용 금지
- 봉투형 용기는 의료폐기물을 그 용량의 75% 이상이 되도록 넣어서는 안되며, 위탁처리시 상자형 용기에 담아 배출
 - ※ 상자형 용기는 75% 이상으로 넣을 수 있음
-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해야 함
 - ※ 봉투형 용기만을 사용하여 담고 이를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옮겨 담아 배출하는 것은 가능
- 봉투형 용기에 별도 거치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거치대는 봉투형 용기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로 하고,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투명 플라스틱통 등)이 바람직하며 사용 후 소독 필요
- 의료폐기물을 담은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는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라목에 따른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함
-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의료폐기물 도형, 취급시 주의사항 표기
- 전용용기에 서로 다른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 가능, 다만, 봉투형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 금지
 - 격리의료폐기물과 혼합된 경우 격리의료폐기물로 표기
 - 보관기간, 보관방법 등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
 - ※ 사용개시일은 혼합된 것 중 가장 빠른 것으로 표기
 - 전용용기 취급시 주의사항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란에는 혼합보 관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기재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의료폐기물 종류로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배출
 - 치아는 조직물류이지만 합성수지류 또는 골판지류 용기에 다른 의료 폐기물과 혼합 보관 가능
-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별도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제품만 사용(적정하게 등록된 업체만 제조 가능)
- 재활용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내부 주머니에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의사명을 기재한 후 1개씩 포장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냉장시설에 보관
-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소독 하여야 함

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

○ 기저귀는 비닐(일반적인 비닐봉투)로 개별 밀폐 포장 한 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로 배출 불가**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시 의료폐기물 RFID 태그를 부착해 서는 안 됨

2.2 보관 기준 및 방법

가. 의료폐기물

-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정해진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음.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 보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시 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예외 가능
-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시설은 전용의 냉장시설,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로 구분
 - * 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혈액원, 검역소, 동물검역기관, 동물병원, 국가나 지자 시험·연구기관,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소, 장례식장,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기업체 부속 의무시설 (100㎡ 이상),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노인요양시설은 밀폐된 전용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 가능

< 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시설, 전용용기 및 보관기간 >

종 류		보관시설	전용 용기*	도형 색상	배 출자 보관기간
격리의료폐기물		o 조직물류 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 - 전용 냉장시설(4℃ 이하) o 그 밖의 폐기물	상자형 (합성수 지)	붉은색	7일
위해의료 폐기물	조직물류	-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 전용 냉장시설(4°C 이하) ※ 치아 및 방부제에 담긴 폐기 물은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상자형 (합성수 지) ※치아 제외	노란색	15일 ※치아: 60일
	조직물류 (재활용	ㅇ 전용 냉장시설(4℃ 이하)	상자형 (합성수	녹 색	15일

종	류	보관시설	전용 용기*	도형 색상	배출자 보관기간
	하는 태반)		지)		
			봉투형	검정색	
	병리계	ㅇ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상자형 (골판지)	노란색	15일
	손상성	o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상자형 (합성수 지)	노란색	30일
	ᄱᄆᆞᆕᅵ		봉투형	검정색	
	생물 • 화 학	o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상자형 (골판지)	노란색	15일
			봉투형	검정색	
	혈액오염	O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상자형 (골판지)	노란색	15일
일반의료폐기물			봉투형	검정색	
		ㅇ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상자형 (골판지)	노란색	15일**

- * 액체 상태 의료폐기물은 상자형(합성수지) 사용
- ** 일반의료폐기물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 30일까지 가능

○ 보관창고 기준

-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설치 하여야 하며,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 유지
- 소독약품 및 장비 비치
-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 외부인의 출입 제한,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 보관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종류:	②총보관량 : 킬로그램
③보관기간:	④관리책임자:
⑤취급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⑥운반장소:	

- ※ ① (설치위치)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
 - ② (규격) 가로 60cm이상×세로 40cm이상(냉장시설은 가로 30cm이상×세로 20cm이상)
 - ③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ㅇ 냉장시설

- 4℃ 이하의 설비를 갖추고, 보관중에는 냉장설비를 항상 가동하여야 하며 정상 가동되는 온도계 부착

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

- 배출자는 기저귀를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냉장보관은 30일) 이내 보관 가능
-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및 다른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 불가)하고, 보관장소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 기저귀 보관장소에 기저귀 발생 및 처리상황을 기록·비치하고 3 년간 보존

3장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3.1 분리배출 필요성

- ◇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하게 과다한 양이 배출됨에 따라 현행 처리 시설 용량 부족 상황이 발생되어 처리단가 상승 등의 원인
 - ※ 의료기관 발생 모든 폐기물 ≠ 의료폐기물의료기관 발생 감염 우려 폐기물 = 의료폐기물
- □ 일반폐기물 혼합 배출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증가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별로 상당량의 일반폐기물(포장재, 플라스틱 등)이 혼합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







☞ 일반폐기물로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 종이류, 플리스틱류 등이 의료폐기물로 혼합 배출

- □ 발생량에 대비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은 부족
 - 의료폐기물은 감염성 우려에 따라 전용 처리시설에서만 처리 가능하나의료폐기물 발생량은 급증하고 처리업체 처리용량은 한계 임박
 - 주민 및 지자체의 입지 반대가 강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신규 설치나 시설 증설 곤란
 - 발생량 증가는 처리단가 상승의 원인이 되며, 향후 의료폐기물을 적정 하게 위탁하지 못해 병워내 장기 보관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 우려

3.2 분리배출 방법

□ 의료폐기물 부리배출 의미

병원 내 발생되는 폐기물 중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포장용기 및 의료행위와 무관한 입원환자·내원객이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이 의료폐기물로 혼입되는 것을 방지

2 분리배출 대상 폐기물 종류

○ 의료기기 및 의약품 포장용기, 백신·항암제·화학치료제 및 혈액 등과 혼합 또는 접촉되지 않은 단순 포도당 등 링거백(수액팩 또는 병), 입원 환자·내원객이 배출하는 일반폐기물 등

③ 분리배출 대상 폐기물의 관리실태 및 개선 방안

[포장재 폐기물 분리배출]

- (관리실태) 약제실(의약품 외부 포장용기 및 사용설명서 등), 간호사실(일반 포장용기, 환자 투약품의 외부 포장용기 등) 등에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배출
- (개선방안) 약제실과 간호사 스테이션 등에 포장재 폐기물 수거용기를 별도로 설치하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서 불필요하게 의료 폐기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



[의료폐기물 여부 확인을 통한 분리배출]

- (관리실태) 환자에게 투여된 링거병(수액팩, 앰플병, 바이알병 등)의 경우백신·항암제·화학치료제 및 혈액 등과 혼합 또는 접촉되지 않은 단순 포도당 등은 일반 폐기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로 배출
 - 다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이라는 인식
 -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는 환자별 투약된 약품의 종류 및 성분 등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 편의를 위해 의료폐기물로 혼합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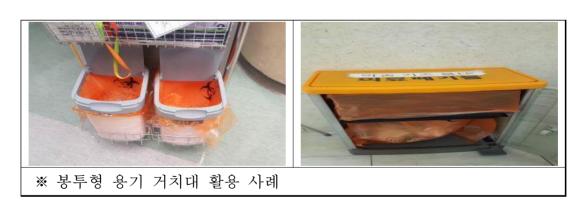
- (개선방안) ①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폐기물 분류 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배출 지양
 - 의료폐기물이 아닌 링거병, 수액팩 등^{*}은 안의 내용물을 모두 비운 후 (내용물은 사업장일반 폐기물 폐의약품 등으로 처리) 일반폐기물로 배출
 - * 재활용이 가능한 의약품 포장재(종이 박스), 링거병 및 수액팩은 재활용폐기물로 배출가능하며, 약솜·거즈 및 필름류 포장재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일 반폐기물로 배출
 - ② 감염병 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외의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일회용기저귀 및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 되지 않은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
 -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주기적 의료폐기물 분류 및 처리 방법 교육(병원내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은 폐기물의 주요 사례]

- 포도당, 영양제 등이 담겨져 있던 바이알병, 앰플병, 수액팩, 링거병
 - ·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되지 않은 링거병, 수액팩, 바이알병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 또는 접촉되어 의료폐기물에 의해 오염된 경우에는 일 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해야 함
 - · 백신, 항암제, 폐화학치료제 성분을 담고 있는 용기는 생물·화학폐기물(의료폐기물)로 분류해야 함
- 혈액·채액·분비물·배설물과 접촉되지 않은 석고붕대, 의료기기 등
- 건강검진을 위해 수집한 소변 묻은 종이컵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 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 거즈, 솜 등
- 치과치료 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와 의료기기 등을 세 척한 세척수
 - ※ 구강내 혈액이나 분비물을 닦아낸 탈지면 등은 의료폐기물이며, 의료기기 등에 묻어 있는 혈액 등을 닦아낸 탈지면 등은 의료폐기물
 - ※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분비물, 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석션기로 흡입된 액상의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되는 동물사체는 발생량에 따라 생활 또는 사업장일반 폐기물로 분류
 - ※ 전염병 등에 의한 폐사동물은「가축전염병예방법」적용
-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이라도 미용을 위해 깍은 동물의 털, 손·발톱,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기저귀, 패드, 휴지 등
- 피부 관리 후 단순히 얼굴에 올려놓는 물이 묻어 있는 거즈나 솜
- 일회용기저귀 중에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외의 일회용기저귀 및 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되지 않은 일회용기저귀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해 적정하게 세탁한 후 폐기한 환자복
- ※ 의료폐기물 해당여부에 대한 민원 회신 사례 : p23 참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합리적 사용]

- (관리실태) 병원내 많은 장소(병동, 병실, 로비 등)에 다수의 전용용기를 비치하여 1~2회/일 수거해 배출하고 있어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배출
 - 전용용기의 자체 무게도 상당(특히 합성수지 용기)하나 다수의 병원 에서는 소량의 의료폐기물만 담긴 채 배출
 - 봉투형 용기만 사용하고 이를 수거해 하나의 골판지류 상자에 여러 개의 봉투형 용기를 담아 배출할 수도 있으나 다수 병원에서는 개시 단계에서부터 골판지류 상자에 봉투형 용기를 끼워 사용
- (개선방안) ① 다수의 봉투형 용기를 하나의 골판지 용기에 담아 배출
 - 봉투형 용기 거치대를 활용하여 의료폐기물을 담고, 봉투형 용기가 75% 미만 수준으로 담겼을 때 전용 운반구로 옮겨 골판지 용기로 배출
 - 거치대는 봉투형 용기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로 하고, 내부를 확인(불투명 재질의 경우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등을 표시) 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소독 필요



- ② 합성수지 용기의 경우 불필요한 대형 용기사용은 지양하고 발생되는 양을 고려한 적정 크기의 용기를 사용해 대형 용기에 소량의 의료폐기 물이 담겨진 상태에서 배출되는 것 자제
 - ※ 합성수지 용기 1 ℓ -0.16kg, 10 ℓ -0.7kg, 20 ℓ -1.15kg 수준
- 전용용기 개시 후 내용물이 거의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1\sim2$ 일 사용 후

밀봉하여 배출하는 것은 자제하고,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고려하여 전 용용기의 효과적인 사용

[환자 및 내원객 관리]

 (관리실태) 일반 환자나 내원객은 의료폐기물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여 채혈환자의 약솜 등이 일반폐기물과 혼합되어 버려지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례 빈번



채혈실 앞 의료폐기물 용기에 혼합된 일반폐기물



채혈실 주변 일반폐기물 수거용기에 배출된 약솜 등

- (개선방안) 병원 내 일반폐기물 쓰레기통과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설치된 위치에 안내판 등을 부착하여 일반폐기물 과 의료폐기물 분리 배출 유도
 - 의료폐기물 발생 자체가 없을 수 있는 병원 로비, 로비 화장실 등에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치를 자제
 - * 일반폐기물 수거시 약솜 등의 의료폐기물 발견할 경우 접촉된 주변 부분만 재수거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이동(현재 일부병원에서는 일반폐기물 쓰레기통에 약솜 등을 발견하면 그 쓰레기통 안의 전체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이동하여 처리)

4장 기타 의료폐기물 처리 등

4.1 처리계획 확인

가. 의료폐기물

-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처리하기 전 관할관청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 ※ 관할관청 : 종합병원(환경청*), 그 외의 병의원, 보건소, 연구소 등(시・군・구)
 -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 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 ㅇ 확인 받은 사항 중 아래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확인을 받아야함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의료폐기물 월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
 - ※ 월평균 배출량은 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 새로운 의료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 의료페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이나 처리자 변경
 - 공동처리하는 사업장 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 변경(공동처리만 해당)

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

-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 배출하여야 함
 -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외의 일회용기저귀 및 혈액이 함유 되지 않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되지 않은 일회용기저귀
 -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를 하여야 함

- 폐기물 종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51-27-99)로 세부 분류
-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할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이계·인수 내용 입력*하여야 함
 - * 사업장일반폐기물은 RFID 태그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계서 내용 직접 입력
-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계서 입력 대상 제외
 **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로 배출 불가
 - 신고 및 폐기물 인계서 대상에서 제외되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야 하며, 발 생·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관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폐기물을 하루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인계서 작성 대상에 해당
- 배출자 신고 사항 중 아래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의료폐기물 월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 ※ 월평균 배출량은 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 새로운 사업장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 공동처리하는 사업장 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 변경(공동처리만 해당)

4.2 공동운영기구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종합병원 외 둘 이상의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여 개별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유반 및 처리할 수 있음
 - ※ (사례) 공동운영기구(시도 의사회 등)에서 전용 차량을 운영(수집운반증 발급), 회원 병원의 의료폐기물 수거 후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공동운영기구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에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 ㅇ 공동운영기구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아래 업무 대행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변경확인 서류 제출, 의료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 입력, 의료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 ※ 공동운영기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병원별 관리대장은 작성하여야 함

4.3 수집·운반 개요

가. 의료폐기물

- o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
- 수집・운반차량
 - 4℃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운반 중에는 항상 냉장설비를 가동
 - 밀폐된 적재함 설치
 - ·의료폐기물은 흩날림·유출 및 악취의 새어 나옴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
 - · 적재함 내부는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서 약물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온도계를 붙이고,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
 - 차량의 차체는 흰색으로 색칠하고,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

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붙이거나 표기

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

-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에 담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으로 수집·운반
 - 4℃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운반 중에는 항상 냉장설비를 가동
 - 흩날림·유출 및 악취의 새어 나옴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 이 설치된 차량
 - ·페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 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 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4 처분 개요

가. 의료폐기물

- 모든 의료페기물은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분
- 재활용 금지, 다만, 「약사법」에 따라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 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 가능
- 폐기물 처리업체는 소각만 가능, 병원 내 자가 처분시설로는 소각과 멸균·분쇄만 가능(현재 1개 병원에서 멸균분쇄시설 운영 중)
- 환자의 혈액이나 혈액·분비물·배설물 등이 섞인 물 등 액체상태 의료 폐기물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

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

(51-27-99)를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소각시설에서 처분(재활용 금지)

4.5 RFID 개요

- 의료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처리정보가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 그 인식을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전자정보시스템
 - ※ (기존) 배출자는 종이 인계서를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공 → 의료폐기물 인수인계 정보를 전자시스템(올바로)에 접속하여 수기로 입력
 (RFID) 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 자동 인식을 통해 인수인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자시스템(올바로)으로 입력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기술)

- 전파를 이용하여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로서 내장된 IC칩에 각종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무선으로 실시간 송·수신하는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
- RFID 태그, RFID 리더기(고정형, 휴대형), 태그발행기로 구성
- ㅇ 업무 흐름도
 - (배출자) 전자태그가 부착된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배출, 무게 계 근 및 리더기로 정보 인식 후 보관창고 보관
 - (운반자) 리더기를 통해 인수 폐기물 정보 인식
 - (처리자) 운반자로부터 인계시 리더기를 통해 정보를 인식하고, 소 각시설 투입구에 설치된 자동 리더기로 소각처리 정보 인식
- 배출자 업무 절차
- < 대형병원(고정리더기 설치 병원) >
 - ① 전자태그를 구매한 후 태그발행기를 이용하여 태그를 발행하거나 폐기물별·성상별 발행된 태그 구매
 - ※ (태그발행) 전자태그에 폐기물종류 및 성상 등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 ②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물 정보가 담긴 태그를 발행 · 부착

- ③ 폐기물 보관창고 입고
 - 고정형리더기와 연결된 PC화면상의 'RFID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초기 화면 '폐기물 입고' 버튼 클릭
 - 고정형리더기에 연결된 전자저울로 계근 → 리더기를 통해 태그에 담긴 폐기물종류, 성상, 중량 등 폐기물정보를 인식
- ④ 폐기물 출고
- 프로그램 초기화면 '폐기물 출고' 버튼 클릭 → 입고된 폐기물 정 보가 화면에 생성
- 고정형리더기 안테나 통과 → 입고된 폐기물 중 출고 처리된 폐기물이 체크 표시되고 화면 하단에 출고되는 폐기물 총중량 및 개수표시 → 운반자가 이를 확인하고 운반자인증카드를 리더기 안테나에 갖다 대어 인증 → 화면하단의 전송버튼을 클릭하여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
 - ※ 배출한 폐기물운반 및 처리정보는 올바로시스템으로 조회가능
- < 중소형 병원(고정리더기 미설치 병원) >
 - ①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발행된 태그 구매
 - ② 용기에 폐기물정보가 담긴 태그 부착
 - ③ 운반자
 - 휴대형리더기 로그인 → 운반자 인수버튼 클릭 → 휴대형리더기로 태그 인식 → 폐기물 정보가 휴대형리더기 화면에 출력 → 중량부 분을 클릭 후 중량입력(폐기물명을 클릭하면 태그별 세부 정보 확인가능) → 차량번호 선택
 - * 중량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병원별 계근기 설치 필요
 - ④ 배출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배출자 인증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댐으로써 인증

⑤ 전송버튼을 클릭(Allbaro전송)함으로써 폐기물 운반자 인수작업 완료

참고

의료폐기물 분류 관련 질의응답 사례

< 1. 일회용기저귀 관련 >

□ 일회용기저귀 분류 관련

1-1

- Q) 요양병원에서 단순 투약이나 재활치료만 받는 환자의 기저귀는 의료 폐기물인지?
- Q) 신생아실에서 나온 건강한 아기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의 일회용기저귀 및 혈액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그 외 환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 비닐로 개별포장 후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 ※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로 배출 불가

(**보관기간**) 다른 폐기물과 별도의 보관장소에 15일 이내 보관(냉장보 관시 30일)이 가능하며 보관장소는 주1회 소독

(운반) 일회용기저귀 전용 4도씨이하 냉장차량으로 운반

(처리) 사업장일반소각장에서 처리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배출량을 합산한 양이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폐섬유류(51-27-99))를 하고,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할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입력하여야 함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배출량을 합산한 양이 하루 평균 300kg 미만 발생하는 사업장>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입력대상에서 제외되나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발생·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관장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나6)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제1호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회용기저귀는 제외됨

- Q) 일회용기저귀가 제외되므로 비감염성 환자가 사용한 생리대도 제외되는 는지? 화장실에 배출되는 기저귀와 생리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A) 환자의 혈액, 채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어 있는 생리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나, 의료행위와 관련 없거나 단순 내원객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사항('19.10.29) 은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구분을 규정한 것으로 생리대에 대한 구분을 규정한 것이 아님

1-3

- Q) 입원 중인 환아의 일회용기저귀는 법적 기준에 따라 의료폐기물 혹은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될 것인데 방문객(영유아)에게서 나온 일회용기저 귀와 외래진료시, 수유실, 예방접종으로만 방문하는 영유아의 기저귀는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로 분류하여 처리해도 되는지?
- A) 금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19.10.29.)으로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거나, 일반폐기물(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로 분류됩니다.

일반폐기물(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서는 안됩니다.

1-4

- Q) 의료행위없이 나온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데 의료행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제시가 필요하고 만약 의료행위가 있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면 되는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의료인이 하는 진료, 주사, 투약, 처치, 간호 등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은 티슈, 탈지면, 붕대 등은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회용기저귀의 중「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기저귀 및 혈액이 묻은 기저 귀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1-5

- Q) 일회용기저귀 배출시 환자의 대소변과 접촉된 부수적인 일회용품(비 일장갑, 패드 등)은 어떻게 배출하여야 되는지? 일회용기저귀 수집하 는 곳에 같이 배출해도 되는지?
- A) 배출된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면 해당 일회용기저귀와 접촉된 일회용품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며, 배출된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로 배출된다면 해당 일회용품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 일회용기저귀의 정의는 무엇인지? 속기저귀, 팬티기저귀, 깔개(패드) 등을 사용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일회용기저귀로 볼수 있는것인지?
- A)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회용기저귀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5호, '19.11.28)」 제13호2)의 위생용품 유형에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 Q)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의 일회용기저귀 및 혈액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는 일반 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반 치매 노인의 대·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된 기저귀는 의료폐 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일회용기저귀 경과조치 관련

1-8

- Q)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 대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봉투 및 보관시설을 12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처리배출자 신고도 해야 하는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는 처리계약이 완료 될 때까지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전용봉투 및 보관시설 등은 의료기관 일회용기 저귀로 배출하기 전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1-9

- Q) 개정(19.10.29) 이전인 2019년 10월 15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계약 시작일은 11월1일인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의료폐기물로 처리 가능한지?(예,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법 개정 이후 최종계약 되는 사례가 많음)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제2항에 따라 규칙 시행 이전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 경우 계약종료일 까지 경과조치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일회용기저귀 보관장소 관련

- Q) 보관 장소 기준이 무엇인지? 보관장소는 기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와 같은 공간에서 보관해도 되는지? 이 경우 육안으로 구역 분리가 확실한 경우 인정가능한지? 구역 분리하는 것은 가벽을 치고 문을 달아야하는 것인지? 자바라 등으로 막거나 또는 바닥에 줄을 긋고 분리해도되는것인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5호다목2)나)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밀 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과 별도의 보 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 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할 경우 질의하신 가벽 또는 자바라 등의 간이 칸막이로 구획을 구분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기존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보관장소를 밀폐구조로 하여 구분하여야 합니다. 즉, 가벽 또는 자바라 등의 간이 칸막이로는 구획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1-11

- Q) 보관장소는 주1회 소독을 해야 하는데 소독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의료폐기물 창고를 소독할때 같이 소독해도 되는지? 소독대장도 갖추어야 하는지?
- A)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주1회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독대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일회용기저귀 배출자신고 관련

Q) 하루 평균 배출량이 300kg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하는데 하루 평균 배출량 300kg 산출식은 어떻게 되는지? 배출량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평균의 개념 및 배출일의 기준은 무엇인지? 미신고시 행정처분 사항은 무엇인지?

A 1) 배출량 산출식?

(사례 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전 의료폐기물(기저귀 포함) 250kg/일, 일반폐기물이 150kg/일(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 배출되는 A 병원에서, 개정 후 의료폐기물 50kg/일, 일회용기저귀 200kg/일, 그 외 일반페기물 150kg/일 이 배출할 경우

⇒ 사업장폐기물(기저귀+그 외 일반폐기물)을 총 350kg/일 배출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에 해당, 올바로시스템 입력대상

(사례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전 의료폐기물(기저귀 포함) 250kg/일, 일반폐기물이 50kg/일(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 배출되는 B 병원에서, 개정 후 의료폐기물 50kg/일, 일회용기저귀 200kg/일, 그 외 일반페기물 50kg/일이 배출할 경우

→ 사업장폐기물(기저귀+그 외 일반폐기물)을 총 250kg/일 배출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에 미해당, 올바로시스템 미입력대상

A 2) 평균의 개념 및 배출일의 기준은 무엇인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1호에 따라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예상량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배출량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배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향후 배출량 증가로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A 3) 미 신고시 행정처분은?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는「폐기물관리법」제68 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1-13

- Q) 설명회에서 대기,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운영 의료기관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기준이 100kg이상 이라고 했는데 명확한 법 적 기준이 무엇인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회용기저귀 감영성 여부 판단기준

Q) 감염병의사환자와 병원체보유자 등 감염병 확인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진단 전 배출된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시감염 전파 위험이 매우 큼으로 의료폐기물로 배출하게 될텐데 이럴경우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법적조치가 있는지?

감염병 의사환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매우 어려워 의료폐기물로 처리 해야 되는 것인지 모호하여 판단기준 제시 요청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 비고 3호 규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 판단하에 감염병 확진 전이라도, 감염증상 등이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기저귀의 경우 의료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감염병 임상 증상이 없으며 확진 검사 실시가 불필요하다고의료진이 판단할 경우,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일반폐기물로분류됩니다

□ 일회용기저귀 개별포장 관련

1-15

- Q)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개별포장 후 전용봉투에 배출해야하는데 개별 포장 방법은 무엇인지? 봉투의 기준이 있는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나목7)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일회 용기저귀는 비닐로 개별 포장 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전용봉투에 담아 야 합니다. 즉, 개별 포장의 방법 및 봉투규격 기준은 없습니다.

1-16

- Q)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제3호 나목 7)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경우 비닐로 개별 밀폐 포장 관련 질의
 - 1) 개별 밀폐포장이란 일회용기저귀 한개씩 포장해야 한다는것인지?
 - 2) 또한 밀폐포장이란 진공포장을 말하는 것인지?
- A)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개별 밀폐 포장은 진공포장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기저귀를 하나씩 싸서 밀봉(묶어서 배출하는 방법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개별 포장된 일회용기저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아닌 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는 분리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Q) 병실에서 일회용기저귀를 배출 즉시 개별 포장하여 전용봉투에 넣어 최종 배출하는데 운반업체를 통해 이송 시 전용봉투 손상을 대비하여 별도 골판지 박스에 담아서 배출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또는 보관창고에 보관할때 별도 박스함을 만들어 보관해도 되는지?
- A) 배출 및 보관 시 박스 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박스 사용도 의료기 관 및 운반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박스를 사용하더라도 개별포장 및 전용봉투는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일회용기저귀 기록 및 보관 관련

1-18

- Q) 일반폐기물 300kg이상으로 RFID 입력 대상이나 매일 수거하지 않고 주1회 또는 10일에 1회 정도 수거하는데 수거업체에서 계량한 값으로 발생량과 처리량을 등록하는데 별도 병원에서 저울을 비치하여 매일 발생하는 것을 기록해야하는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서는 계량을 위한 저울에 대한 비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출자는 발생량, 처리량(자가, 위탁처리)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확한 중량 기재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9

- Q) 올바로시스템 입력에도 불구하고 보관장소 내 대장 기록을 꼭 해야 하는지? 양식은 있는지?
- A) 올바로시스템 입력과 별도로 보관창고 내 발생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 보 전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다목6)의 작성양식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1-20

- Q) 의료폐기물은 RFID로 올바로시스템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일회용기저귀도 올바로시스템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A)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인 경우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및 보관장소 내 대장 기록을 하여야 하며, 배출자 신고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올 바로시스템을 이용의무는 없고, 보관장소 내 대장 기록을 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 입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올바로시 스템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일회용기저귀 관련 기타 질의

- Q) 멸균분쇄시설을 통해 자가처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도 의료폐기물과 함께 처리가능한지?
- A)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0항의 규정은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가처리시설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22

- Q) 병원 내부에서 일회용기저귀를 수집할 경우 전용봉투를 일반쓰레기통에 씌어서 사용가능한지?
- A)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거치를 위한 일반쓰레기통 사용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3

- Q)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는 폐기물처리분담금의 대상이 되는지?
- A) 현행 자원순환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 상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폐기물처분부담금에 해당됨

1-24

- Q) 일회용기저귀를 운반하는 사람의 복장 기준이 있는지? 참고로, 의료기 관평가인증기준에는 의료폐기물 운반자의 복장기준이 가운,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운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A)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운반자에 대한 복장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25

- Q) 보관은 실온에서 하는데, 냉장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유는?
- A)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을 의료기관 일회용기 저귀로 분류하도록 하였으나, 악취, 세균증식 등 위생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의 보관 및 수집·운반 규정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1-26

- Q)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업체로 허가받은 업체 공유 요청
- A)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업 허가 받은 업체에 대한 현황을 조사 중에 있으며, 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 Q) 소각장을 관에서 지정 및 소개,알선이 가능한가?
- A)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소각 가능 업체에 대한 현황을 조사 중에 있으며, 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1-28

- Q) 수집운반업체에서 보관기한이 있는지와 보관창고 보유가 가능한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나목 및 다목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29

- Q) 병원에서 기저귀가 10kg 미만이라 따로 수집운반 업체를 찾기도 어렵고 그 정도 양 때문에 창고 신설, 대장 관리 등이 어렵다고 그냥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싶다고 하는데 분류자체가 의사의 판단에 맡기기로 되어있는 이상 이는 불법이 아니지 않는가?
- A)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및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해당 규정에 명시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Q) 시·군·구청에서 조례상 수집운반 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거자료를 줄 수 있는가?
 -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 조례상 냉동차 하나 가지고 허가가 불가하다는 관청이 있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개정 법령을 출력 제시 했는데도 같은 반응이라고 하는데 대책을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가목1)다)에 사업장생활폐기물 수 집운반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의 비고 제8호라목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인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 하려는 경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의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별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사업계획 및 허가를 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영업대상 폐기물 폐섬유류 51-27-99)
 - 또한, 기존에 보유한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 폐기물 관련 도색 및 표식을 제거하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감 차 변경신고(→환경청) 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장비로 등록 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인허가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감차하더라도 고유 차량을 3대 이상 확보하여야함

< 2. 의료폐기물 분류 관련 >

□ 건강검진 폐기물 관련

- Q) 일반 외래에 진료를 보고 소변검사를 위해 소변을 모은 종이컵은 의료폐기물인가요?
- Q) 건강검진 중 폐기능 검사 시 사용되는 마우스피스도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지?
- Q) 건강검진 목적으로 위와 대장 내시경 검사시 사용된 침이 묻은 방수포나 대변과 같은 분비물이 묻은 다이아패드는 의료폐기물로 봐야 하나요?
- Q)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방문한 사람의 치과 구강검진시 사용되는 일회용 설압자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 A) 의료기관 등의 입원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체액·분비물·배설물이 묻어 있는 것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나, 건강검진자의 체액·분비물·배설물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 의심 검진자로부터 발생되는 것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격리의료폐기물 관련

2-2

2-1

- Q) 격리환자가 남긴 잔반 및 식기도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 Q) 감염병 환자에게서 나온 일회용품(식기류 등)은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는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 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로서,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리환자가 사용한 식기와 잔반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격리환자에게서 발생한 음식물폐기물 등은 감염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소독, 멸균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조치를 하고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격리의료폐기물 관련하여,

- 1. 격리병동에서 격리환자의 보호자가 사용하였던 물품들을 환자 퇴원시 모두 버리고 가는데, 보호자가 사용하였던 물건들을 격리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 2. 환자의 소변을 받았던 소변기 및 췌변기(대변기)는 사용 후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는지?

A) 질의 1에 대하여

-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격리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자가 사용한 물품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전관리를 위해 격리병실에서 발생하였으나, 격리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및 [별표6]에 따라 소독하여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외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으니, 동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함

질의 2에 대하여

- 대소변기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환자의 배설물 등이 묻은 채로 배출된다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4

- Q) 격리병실 의료진이나 병실 출입자가 입는 1회용 가운 등이 환자의 체액이나 분비물이 묻은 경우에도 격리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음
 - 그런데 출입자가 입은 1회용 가운 등이 오염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폐기물은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A)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 의료 행위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며 감염의 우려가 없는 것은 격리의료폐 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격리병실에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출입자가 입은 1회용 가운이 환자의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로 오염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Q) 격리병실 의료폐기물 처리방법 문의
- 1. 감염성 환자를 수용하는 격리병실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적색합성수지)와 일반 생활쓰레기용 휴지통을 같이 비치하여 분리배출 해도 되는지?
- 2. 감염성 환자를 수용하는 격리병실에 환자 외 보호자가 사용했던 마스크, 가운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 3. 감염성 환자를 수용하는 격리병실 내에서 환자가 사용한 커피믹스, 종이컵, 햇반, 음료캔 등을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것인지?
- 4. 감염성 환자를 수용하는 격리병실 내에서 보호자가 사용한 커피믹스, 종이컵, 햇반, 음료캔 등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 5. 격리병동내 전실에 있는 간호 스테이션에서 간호사들이 사용한 폐종이, 물품박스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 A) (질의1번) 「폐기물관리법」상 격리병실 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생활쓰레기용 휴지통에 대한 비치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2,3,4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 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 따라서,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사용한 물품은 격리 의료폐기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전관리를 위해 격리병실에서 발생하였으나, 격리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사 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및 [별표6]에 따라 소독하여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5)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은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링거병, 앰플병 및 바이알병 등 관련

- Q) 환자에게 사용한 혈액 등과 접촉되지 않는 수액병, 앰플병, 바이알병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로 처리해도 되는지?
- Q) 수액병이나 수액백을 폐기할 때 의료폐기물인지? 그리고 항생제, 항암제 등이 아닌 단순 비타민을 믹스한 수액백은 의료폐기물인지? 아미노산 제제 수액병은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와 혼합·접촉되지 않고, 혈액 등이 함유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의료폐기물이 아닌 경우 사업장폐기물(일반, 생활계)에 해당되며, 사업장폐기물 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지정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이므로 폐기물의 성상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폐기물의 분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수액병 또는 수액백이 의료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동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의약품 포장 용기도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라고 되어있던데 환자에게 드레싱을 하기위해 일회용 드레싱 세트에 포타딘, 알코올 등을 담고 환자에게 드레싱을 실시했을 경우 사용한 포타딘 솜이나 알코올 솜은 의료폐기물로 버리고 직접 접촉하지 않은 용기는 포타딘이 묻어있고 알코올이 묻어있어도 일반 폐기물에 버리면 되는건지?
- A)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이외의 폐의약품은 의료폐기물에 해당 하지 않으며, 해당 용기에 의약품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발생량, 배출시설 유무 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폐의약품")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Q) 요양병원 노인환자의 도뇨관은 의료폐기물인지? 수액세트, 종이컵, 린 넨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같이 처리가능한지?
- A)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묻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단, 일회용기저귀의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기저귀 및 혈액이 묻은 기 저귀는 의료폐기물 해당하며, 기타 환자 등으로부터 발생 되는 것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 혈액, 체액, 분비물 등 묻어 있는 탈지면 및 휴지 관련

2-9

- Q) 내시경, 치과 검진시 석션 등을 통해 흡입한 액상의 분비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A) 석션 등을 통해 배출되는 분비물은 일반의료폐기물(액상)에 해당하나, 분비물에 혈액이 섞여 있는 경우는 조직물류 폐기물(액상)에 해당되므로 의료폐기물로 적정 처리하여야 합니다.

2-10

- Q) 병원에서 경관 급식시 사용하는 경관식세트(feeding tube)는 의료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 A) 혈액.체액.분비물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경관식 세트(feeding tube)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며, 혈액 등 다른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지 않은 경관식 세트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Q) 환자의 몸에 바른 초음파젤을 닦은 티슈는 일반의료폐기물인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초음파젤 및 티슈에 환자의 혈액.채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거나, 의료폐기물과 혼합. 접촉된 경우에만 의료폐기물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환자에게 진료를 목적으로 직원이 안약을 눈에 넣어준 뒤 흘러내리는 약물을 휴지로 닦게 되는데, 닦은 휴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 A)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와 혼합·접촉되지 않고, 혈액 등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2-13

- Q) 환자 1명이 재활치료, 주사, 내시경 등의 행위로 침상에 잠시 눕고 난 후 다음 환자가 그 침상을 사용하기 전에 소독티슈로 닦고 있으며, 이 때 사용한 소독 티슈는 의료폐기물인지?
- A) 침상에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어 있어 이를 닦아낸 경우라면 의료폐기물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4

- Q) 병실내 화장실에서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배설물 및 혈액이 묻은 휴지는 의료폐기물인지?
- A)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는 의료폐기물 중 "일반 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실내 화장실에서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배설물 및 혈액이 묻은 휴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Q) 수술실에서 사용했던 일회용 모자, 마스크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야 하는지,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야하는지?
- A) 환자의 혈액·채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일회용 모자, 마스크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혈액 등이 묻어 있지 않고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되지 않은 경우라면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생량, 배출시설 유무 등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Q) 환자 입원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의료폐기물에 들어가는지? 감염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가 사용한 모든 쓰레기가 의료폐기물인지?
 - 감염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가 사용한 종이컵, 휴지 등
-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의료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종이컵, 휴지 등 환자가 사용 후 폐기하는 용품이 환자의 혈액 ·체액·분비물·배설물 등이 함유되어 있거나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된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

2-17

Q) 병동에서 발생하는 객담(가래)은 의료폐기물로 반출해야 되는지? 의료 폐수로 보내도 되는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객담(가래)는 분비물로서 일반의료 폐기물에 해당하며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액상의 폐기물을 「물환경 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1. 병원내에 있는 동물실험실(토끼, 쥐)에서 관리하는 동물에게 나오는 깔집(쥐집 바닥용, 소변 묻음), 대변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 2. 병원내에서 유해화학물질(시약, 세척제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해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포장제, 플라스틱용기)를 폐기할 때 의료폐기 물로 버려야하는지? 해당이 안된다면 생활폐기물로 버려도 되는지?
 - 3. 병원내에서 중환자실 및 수술실 등에 방문 또는 면회객이 사용하는 일회용마스크, 모자, 가운, 신발덮개 등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 4. 혈액, 체액 등이 묻지 않은 알콜솜 등을 병원 내규에 의한 개봉일 관리 차원에서 버릴 경우 생활폐기물로 버려도 되는지?

A) 질의 1에 대하여

- 병원에서 발생하는 실험동물의 배설물 및 배설물 등이 함유된 깔짚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의하신 유해화학물질을 담은 용기가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하지 않은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성분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폐기물 폐산, 폐알 카리, 폐유기용제, 폐유독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출입자가 입은 일회용 마스크, 모자, 가운, 신발덮개 등이 환자의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로 오염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4에 대하여
 - 병원에서 발생하는 혈액·체액 등 의료폐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알콜솜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폐의약품)로 분류되며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19

Q) 병원에서 나오는 생리대가 의료폐기물인지?

A)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환자에서 발생되는 생리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단, 의료행위와 관련 없거나 단순 내원객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환자복 및 메트리스 관련

Q) 병원 매트리스를 폐기하고자 할 때 이것이 의료폐기물인지?

A)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접촉하지 않은 매트리스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20

Q) 환자복이나 환자가 덮은 이불, 수술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 의료폐기물인지?

A)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세탁한 후 폐기하는 환자복이나 이불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21

Q) 병원에서 x-ray 촬영시 환복 가운을 1회용 가운으로 교환하려 하는데, 촬영 완료 후에는 1회용 가운을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일반폐기물로 처 리해야 하는지?

- A) 환자의 혈액·채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가운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나, 혈액 등이 묻어 있지 않고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되지 않은 경우라면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의료폐기물 발생장소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일반폐기물 통을 같이 비치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합니다.

2-22

Q)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환의복(환자복) 폐기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 1. 환의복 세탁이 되지 않는 오염된 상태 그대로 폐기를 할 경우
- 2. 화의복을 세탁 한 후에 폐기를 할 경우

A) (질의 1에 대하여)

- 환자복에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나,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세탁한 세탁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폐기하는 경우 발생량, 배출시설 유무 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처리업체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의약품 관련

2-23

Q) 의료폐기물 분류 관련, 생물화학 폐기물의 기준에 폐화학치료제의 범위는?

- A) 「폐기물관리법」에서 화학치료제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화학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품으로서, 이를 폐기할 경우 폐화학치료제에 해당합니다. 현재 파악된 화학치료제 성분은 아래와 같으며, 이 외에도 성분이 위 설명에 해당되는 경우 폐화학치료제로 관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 (항생물질) 페니실린G, 테라마이신, 클로로마이세틴, 에리스로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카나마이신, 겐타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폴리믹신, 암포테리신 B, 니스타틴, 미토마이신C, 블레오마이신
 - (반합성유도체) 암피실린계, 카르베니실린계, 세팔로틴, 세포티암, 세폭시틴, 세포탁심, 세트텍족심, 리팜피신
 - (화학합성품) 술파메톡사촐, ST합체, 트리메토프림, 에탐부톨, 파라아 미노살리, 실산, 이소니아지드, 피페라진, 니리다졸, 클로로퀸, 에메틴, 알킬화제, 메리캅토푸린, 플루오로우라실

2-24

Q)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관조영제는 의료폐기물인지?

A) 환자와 직접 접촉한 조영제가 일부 남은 것이라면 의료폐기물에 해당 하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잔량의 조영제는 의료폐기물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2-25

Q) 소독 등을 위한 과산화수소액 등도 의료폐기물인지?

- A) 과산화수소, 메틸알코올 등은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 *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접촉하여 오염된 경우 의료폐기물 분류

2-26

Q) 혈액투석용 약제는 의료폐기물인지?

A) 혈액 등 다른 의료폐기물과 혼합, 접촉되지 않은 약제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Q) 병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약제는 의료폐기물인지?

A)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나, 그 외의 폐의약품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폐의약품)에 해당

2-28

- Q)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 시 사용하고 남은 혈액투석액이나 혈액투석용 분말 즉, 인체와 접촉하지 않은 미사용 혈액투석용 약제는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로 관리하면 되는지?
- A) 미사용 혈액투석액 및 분말이 환자의 혈액·채액·분비물·배설물 등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폐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29

- Q) 병원 병리과에서 조직검사를 한 후 포르말린 용기에 담긴 포르말린 용액 및 조직은 분리과정을 거친 후 따로 따로 폐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폐기해도 되는건가요?
-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조직물류와 혼합.접촉한 포르말린과 보관통은 조직물류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Q) 병원 약제팀에서 시럽종류의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의 내용물을 다 사용하고 버릴 때에 용기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환자의 체액, 혈액 등은 전혀 묻지 않았으며, 환자가 없는 약제팀 조제구역에서 사용됩니다.
- A) 질의하신 의약품 용기에「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 제2호라목에 따른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가 담겨져 있었다면 폐의약품이 의료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되며, 동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한 용기도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만약, 질의하신 품목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배출시설 설치유무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폐기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동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병원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한 시약을 폐기처분할 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하고 처리하여야 하는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폐시약에 혈액 등 의료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와 시약이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 성분을 담고 있다면 의료폐기물로, 그렇지 않은 경우 폐시약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분류될 수 있으니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액상의 폐기물을 「물환경 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2

- Q)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일괄 의료폐기물로 처리, 폐기하라고 나와 있는데 의료폐기물로 분류할 경우 분류코드를 어떤 것으로 지정하면 되는지? 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하면 되는지?
- A) 마약류가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체인 경우 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폐기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 기타 >

2-33

- Q) 혈액이 들어 있는 주사기는 의료폐기물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 A) 주사기에 혈액이 담긴 경우는 조직물류폐기물로, 주사기에 혈액이 묻은 경우는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 Q) 채혈진단에 사용된 튜브, 검사용기 등은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데, 혈액은 액상으로, 튜브.용기 등은 조직물류폐기물 고상으로 따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지?
- A) 채혈진단에 사용된 튜브, 검사용기 등은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되며 액상의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도 액상의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므로 혈액과 튜브 등을 따로 분리하여 배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 합성수지용기에 혼합 보관·배출 가능

- Q) 액체상태 의료폐기물의 기준은(액상 폐기물의 기준)?
- A) 각종 용기에 혈액 등 액상의 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용기를 기울여서 흘러내리는 경우도 액상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폐기물 보관 중 액체가 흘러내리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액상폐기물로 보고,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36

- Q) 혈액이 담긴 용기는 액체상태의 의료폐기물인가요?
- A) 각종 용기에 혈액 등 액상의 폐기물을 포함하고, 용기를 기울여서 흘러내리는 경우라면 액상폐기물에 해당합니다.

2-37

- Q) 임상병리실에서는 혈액 검사를 위해 사용한 ESR TUBE를 폐기할 경우 혈액오염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조직물류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비고2에 따라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혈액검사 튜브는 조직물류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38

- Q) 병원에서 수술 후 체내에 남아 있는 혈액이나 삼출물을 배액하는 배액 용기(바로박)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 A) 질의하신 혈액이나 삼출물을 제거한 배액용기는 혈액오염폐기물에 해당하며, 용기를 기울여서 흘러내릴 정도로 내용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혈액오염폐기물(액상)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 Q) "혈액오염폐기물"인지 아니면 "조직물류 폐기물"인지 판단 여부 질의1) 환자에게 수혈을 한 후 수혈팩에 소량 혈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수액세트 아래 호스를 가위로 자르면 남아 있는 혈액이 흐를 정도입니다. 질의2) 인공신장실에서 혈액투석을 한 후 액체가 가득 담긴 '혈액투석 필터 및 라인'을 폐기하는 건입니다. 여기에는 "정수물, 중탄산나트륨, 혈액" 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질의3) 혈액투석에 사용한 후 남은(환자에게 주입되지 않은 잔여분) 중 탄산나트륨(NaHCO3) 의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잔여 용액은 생활하수로 버리고, 팩은 일반생활폐기물로도 처리 가능한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 등은'조직물류폐기물'이며,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과 함께 혈액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은'혈액오염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Q) 리도카인 앰플(파손된 것, 파손되지 않은 것)은 손상성 폐기물로 처리 해야하는지? 화학폐기물로 처리해야하는지?
- A) 폐항암제, 폐백신, 폐화학치료제를 담고 있거나 이와 혼합.접촉한 앰플병은 의료폐기물 중 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되며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41

- Q) 병원 약제팀에서 시럽종류의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의 내용물을 다 사용하고 버릴 때에 용기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환자의 체액, 혈액 등은 전혀 묻지 않았으며, 환자가 없는 약제팀 조제구역에서 사용됩니다.
- A) 질의하신 의약품 용기에「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 제2호라목에 따른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가 담겨져 있었다면 폐의약품이 의료폐기물(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되며, 동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한 용기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만약, 질의하신 품목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배출시설 설치유무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폐기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동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2

- Q) 치과에서 발치한 금이 부착된 치아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
- A) 치아는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되며 치아 및 분비물과 분리되지 않은 폐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치아 및 분비물과 분리된 폐금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43

- Q) 임시치아를 만드는 재료(리퀴드 타입)을 다 사용하고 폐기하는 유리병은 재활용이 가능한지?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하는지?
- A) 혈액, 분비물 등이 묻어 있지 않고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되지 않은 경우라면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용기의 재질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Q) 치과에서 치근단 방사선 촬영을 하면 필름 내부에 납 용지가 나오며, 이것은 환자 타액이나 혈액과 접촉되는 것이 아닌데 일반폐기물로 처리해도 되는지?
- A) 질의하신 필름 또는 납 용지가 환자의 타액이나 혈액과 접촉하지 않은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 용지를 포함하고 있는 필름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폐합성수지)로 분류됩니다.

- Q) 동물병원 수의사가 출장방문하여 축산농가에서 동물 조직물이 발생한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의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 따라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축산농가의 배출시설 유무 및 폐기물 발생량 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46

- Q)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 기저귀, 패드, 휴지 등은 의료폐기물인지?
- A) 동물병원에서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 기저귀, 패드, 휴지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진료.처치 등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배설물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47

- Q) 주사바늘에 보호캡이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손상성 의료 폐기물인지?
- A) 주사바늘에 보호캡이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어 외부충격에도 캡이 분리되지 않는 등 주사바늘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전혀 없는 경우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 가능합니다.

2-48

- Q) 병원에서 사용된 주사바늘의 경우 손상성폐기물로 분류되는데, 'IV용 수액니들(수액환자용 특수니들)'도 손상성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 'IV용 수액니들(수액환자용 특수니들, 젤코)'은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탄력이 있고 휘어지며 링거 투여시 쇠바늘과 함께 혈관을 찔러 자리 를 잡으면 쇠바늘은 빼내고 수액니들(젤코)은 혈관에 자리잡은 상태 에서 수액니들(젤코)과 수액세트을 연결하여 링거를 투여
-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의료폐기물 종류에 따라 주사바늘은 손상성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질의하신 플라스틱 재질의 수액니들은 인체 및 전용용기 손상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상성 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액니들이 부드럽게 휘는 재질이어서 전용용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적은 경우,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Q) 한방병원의 약침이나 봉침의 경우 2cc 정도의 약물이 담긴 작은 바이알병을 사용하며, 보통 한번 침을 놓을 때 1cc 정도를 쓰기 때문에 바이알병에 약물이 남게 되는데 이렇게 남은 약물이 든 바이알병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 A) 의료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의료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약물 및 바이알병이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사용한 한방침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폐의약품 등)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50

- Q) 가정에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는 의료폐기물인지?
- A)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규정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배출된 것으로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주사기 등은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51

- Q) x-ray 사진을 찍을때 사용하는 필름이나 수은 등이 포함된 혈압계, 온도계 등은 의료폐기물인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의 규정에 따라 x-ray 필름, 수은 함유 혈압계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등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52

- Q) 병원에서 검사 및 시술 등에 사용되는 기구 및 소모품은 모두 의료폐 기물인지?
- A) 병원에서 검사 및 시술 등에 사용되는 기구, 소모품 등이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53

- Q) 병원내 진단검사실 의료폐기물 관련
 - 1. 정도관리 물질 사용 후 용기는 의료폐기물인지?
 - 2. 화학이나 면역 장비에 사용하는 시약은 의료폐기물인지?
 - 3. 미생물부에서 사용하는 혈액배양용기도 의료폐기물인지?
 - 4. 위 항목 사용하지 않았으나 폐기해야 할경우도 의료폐기물로 배출해야 하는지?
- A) (질의 1, 2, 4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의료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 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약품이나 시약의 종류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약품 종류 및 용기에의 잔여여부 등에 따라 폐기물 분류 및 처리방법이 달라지오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에 대하여)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등은 의료폐기물(병리계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Q) HIV환자의 체액이나 혈액이 묻은 거즈 등은 격리의료폐기물에 속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정감염병이기는 하나 혈액매개주의로 표준주의로 분류되는데, 체액에 상처부위 노출시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격리의료 폐기물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의료폐기물에 버려도 무방한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 따라서, 격리대상 환자로부터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나, 격리대상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55

- Q) 병원 방사선과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 A) 「폐기물관리법」제3조에 따라「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2-56

- Q) 일반 휴지통에 버려진 의료폐기물은 휴지통 전체 내용물이 의료폐기물 인지 아니면 버려진 의료폐기물 주변만 의료폐기물로 분리되는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비고에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한 부분의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분류 하여야 할 것입니다.

2-58

- Q) 병원에서 수술 후 체내에 남아 있는 혈액이나 삼출물을 배액하는 배액 용기(바로박)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 A) 질의하신 혈액이나 삼출물을 제거한 배액용기는 혈액오염폐기물에 해당하며, 용기를 기울여서 흘러내릴 정도로 내용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혈액오염폐기물(액상)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 Q)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주사기를 간섭파 치료기의 도자컵 스펀지에 약물(리도카인 등)을 넣는 용도로 사용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경우 이때 주사기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의료폐기물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주사기가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을 함유되어 있지 않은 일회용 주사기(주사바늘 제외)로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 접촉하지 않은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주사기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하여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된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Q)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손위생 솔과 아바가드용 nail deaner(환자의 체액이나 분비물이 묻지 않았고 직원의 손위생에 사용한 물건)는 의료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
- A) 질의하신 폐기물이 수술 전 의료진의 위생을 위하여 사용되고, 환자의 진료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묻어 있거나 접촉된 경우에는 의료 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2-61

Q) 시술대로 전달된 물품들 중 의료폐기물 해당 여부

- 1. 혈액이 묻은 물품
- 2. 혈액이 묻었으나 닦으면 깨끗해지는 물품
- 3. 혈액이 묻을 가능성은 있으나 육안으로 혈액이 묻지 않은 물품
- 4. 쓰고 남은 수액 세트
- A) (질의1) 혈액이 묻은 물품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의2,3) 혈액 등이 묻어 있거나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며, 의료진 판단하에 혈액이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와 혼합·접촉되지 않고, 혈액 등이 함유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의료폐기물 보관 및 기타 >

3-1

Q)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하나의 전용용기에 혼합해도 되는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보관할 수 있으나,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 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등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경우는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용기에 보관할 수 없으며, 혼합 보관할 경우에는 각각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표시사항'에 '종류 및 성질과 상태'에는 혼합 보관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기재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류로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의료폐기물인 폐배지를 멸균 후 배출해야 하는지?

A) 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배출하기 전 멸균에 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실험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소독, 멸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조치를 하고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3

Q) 폐배지 등 의료폐기물을 멸균 후 배출할 경우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 분쇄의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하며, 멸균분쇄시설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의 폐기물 처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관할 관청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멸균만 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의료 폐기물의 멸균분쇄 처리로 볼 수 없으며,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4

- Q) 병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료폐기물을 봉투형 용기에 담고, 봉투형 용기가 75% 사용이 완료되면 폐기물 종류에 맞는 전용용기에 봉투채로 배출해도 되는지?
- A)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는 의료폐기물(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외의 의료폐기물은 봉투형 용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합니다.(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에는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의 운반구를 사용)

- Q) 봉투형 용기에 담겨있는 것을 상자형 용기에 담아서 배출할 때, 날짜 기재는 봉투형 용기에 쓴 날짜로 해야하는 건지?
- A) 봉투형 용기 사용시 폐기물을 최초로 넣은 날 기준으로 봉투형 용기 외부에 사용개시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의 처리를 위하여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 상자형 용기에 봉투형 용기를 최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으나, 이날부터 보관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투형 용기 사용개시일부터 기산됨)

Q)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및 격리의료폐기물 소독 방법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하며, 격리 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소독 하여야 합니다.
- ※ 약물소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제2호라목에 따른 약물소독

3-7

Q) 의료폐기물인 태반, 치아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인도 가능한지?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인체조직물은 본인이 요구하면 본인에게 인도하여 공설묘지에 묻거나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인도되어 감염, 환경오염 등 부적정한 처리가 예상될 경우에는 인도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3-8

Q)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기는?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위하여 최초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교육(1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9

Q) 대형 조직물류폐기물(대형견 또는 큰 사이즈의 동물사체 등)의 경우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조직물류폐기물에 적합한 합성수지류 용기를 사용하고 포장의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Q) 혈액오염폐기물 처리절차는 따로 폐수정화처리(전용하수관으로 방류 처리)하고 있는데, 그 외의 액상 의료폐기물의 경우(항암제와 같은 독성의 액체는 제외한 환자 배액 등) 비소독물실 클리니컬 싱크에 버려 오수(배설물)정화조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모든 액상 의료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용기에 일일이 다 수거해야 할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액체상태의 폐기물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장에서 의료폐기물 중 혈액오염폐기물(액상)을 수질오 염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허 가받은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유입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종 류의 액상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기관(지자체)의 허 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3-11

- Q) 봉투형 폐기물에 75% 이하로 담아서 배출하고 여러 봉투를 골판지 박스에 담아 배출하라 하는데 골판지 박스에 여러 봉투를 넣을 때 가득 채워도 되는 것인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봉투형 용기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자형 용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고 밀폐 포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3-12

- Q) 최근 많은 공공기관 및 백화점 등은 휴지통을 없애고 녹는 휴지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여성용품 수거함만 비치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이 적용하여 발생하는 휴지를 변기에 같이 버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
- A)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하수·분뇨를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병실에 의료폐기물 함이 아닌 일반 휴지통을 비치하고 수거된 휴지 및 생리대를 봉투형 용기에 옮겨 담아 수거하는 방식은 허용 되는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혈액.배설물 등이 함유된 생리대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병실 내 화장실에서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혈액, 배설물 등이 묻은 생리대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합니다.

- Q) 지침에는 병원로비, 로비 화장실 등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치를 자제하도록 하는데 진료실과 검사실로 구성되어 있는 병원 1층과 2층 화장실에 생리대를 버리기 위해 의료폐기물 상자를 비치해야 하나요? 아니면 생리대를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도 되는지?
- A)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2018.7월)의 의료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로비, 로비 화장실 등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치 자제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 생을 자제하자는 취지이며.
 - 입원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생리대 등은 의료폐기물로 적정 처리하여야 하나, 내원객이나 방문객에서 발생하는 생리대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로비 등에는 전용용기 비치를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 Q) 냉장보관하는 용기의 경우 도형 아래 인쇄나 스티커 부착 관련
 - 1. 보관창고나 장소가 냉장상태인 경우 모두 부착해야 하는지, 냉장 보관창고나 장소인 경우 조직물류, 격리의 경우만 냉장 표기하면 되는지?
 - 2. 인쇄나 스티커가 아닌 용기에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 A)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냉장보관하는 용기의 경우 식별이 용이하도록 도형 아래 '냉장' 표시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과 조직물류폐기물은 섭씨 4도 이하로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에서 '냉장 표시가 없는 전용용기를 냉장보관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냉장' 표시(인쇄, 스티커, 수기표기 등)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Q)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2018년 7월)에 거치대는 봉투형 용기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을 하고, 내부를 확인(불투명 재질의 경우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소독 필요라고 되어 있음
 - 저희 상황은 봉투형 용기의 거치대는 골판지 상자형 전용용기 업체에서 구입하는 흰색 골판지 박스(아무것도 씌여지지 않으며, 업체에서는 무지박스라고 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 A)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인 봉투형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거치대에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으며, 거치대 사용과정에서 이를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불투명한 재질의 거치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치대가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를 담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거치대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치대(흰색 골판지 박스) 자체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17

- Q)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의료인력이 있는데 의료폐기물을 의무적으로 계약해서 폐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인 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간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지?
- A) 의료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의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 1일 평균 발생량 등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 냉장시설(4도씨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냉장고 위쪽 냉동실(영하 15도 안팎)에 보관해도 가능한지?
- A)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하며,
 4℃ 이하 냉장보관은 냉동보관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나 필요한 경우 냉동보관도 가능합니다.

- Q) 의료폐기물 혼합보관시 보관기간, 보관방법 등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관리한다고 알고있는데,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는 생물화학 폐기물 폐기시 폐화학치료제통이 들어가는데 빈공간이 조금씩 남아서 주사바늘(손상성)을 혼합하여 보관일은 생물화학폐기물 기준인 15일을 기준으로 배출하려 함
 - 이 경우 혼합보관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보관 및 배출시 생물화학 태그를 붙여야 할지 손상성 태그를 붙여야 할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액체상태 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생물화학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은 혼합보관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생물화학폐기물의 보관기간(15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표시사항"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에는 혼합 보관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기재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류로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Q) 메르스 때 격리의료폐기물 폐기 시 합성수지통 안에 별도의 속지를 넣어 폐기물을 보관하고 배출 시 소독 후 밀봉하고 뚜껑 닫고 보관장소로 이동
 - 지금 위의 방식으로 처리 하고 있는데 격리의료폐기물을 계속 위의 방식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 A)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은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의 안전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전용봉투와 전용용기로 이중 밀폐 등 통상의 격리의료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이 아닌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격리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 사용방법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사용, 전용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 내부 소독,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 외부 소독 등의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Q) 1. 생물화학폐기물에 폐항암제가 포함되고, 액상의 폐기용기가 합성수지로 되어 있음. 폐항암제를 희석하고 투여한 주사바늘인 경우생물화학폐기물로 같이 버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분리하여 손상성폐기물로 버려야 하는지?
 - 2. 격리의료폐기물은 합성수지로 폐기하고 있음. 격리의료폐기물 안에 환자에게 주사바늘과 주사기를 격리의료폐기물로 버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분리하여 손상성 폐기물로 버려야하는지?
- A) 질의 1에 대하여,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항암제는 생물·화학폐기물로, 주사바늘은 손상성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보관할 수 있으나, 손상성폐기물, 액체상태 폐기물 등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경우는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용기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염병으로 격리된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과 주사기는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22

- Q) 의료폐기물 보관 표지판 관련하여,
 - 보관 창고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과 간판이 있음) 사용 중인 외래 침구실과 간호과에 전용용기가 있는 곳에도 의료폐기물 표지를 따로 부착해야 하는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사용 중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있는 부서, 병실 등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Q) 요양병원 인증시 의료폐기물 박스에 뚜껑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폐기물 박스에 폐기물을 버리다 보면 뚜껑도 오염이 생기니 뚜껑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음.
 -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가 따로 있는데, 꼭 뚜껑이 있어야 하는지?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기에 뚜껑을 안 덮어도 되는지?
- A)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 사용 중 뚜껑 또는 덮개의 개폐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합니다.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시 별도의 뚜껑 또는 덮개를 사용할 경우에는 혈액 등 의료폐기물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Q) 일부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의료폐기물을 버리는 박스 중에 프라스틱통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알아보니 이 프라스틱 박스는 의료폐기물 전용 박스는 아니라 함.
 - 이 경우, 안에 봉투도 일반 봉투가 비치되고 이것을 수거하여 의료폐기물 전용 봉투에 다시 담아서 의료폐기물 전용 박스에 담아서 처리 한다고 함
 - 이처럼 병실이나 복도에 의료폐기물 전용박스가 아닌 박스(프라스틱)에 의료폐기물을 버리는 곳이란 표시를 한 후 수거하여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와 전용 박스로 처리해도 되는지?
 - 의료폐기물이란 표식을 한 프라스틱통에 폐기물 전용봉투를 비치 후 수거하여 폐기물 전용박스에 처리 하면 되는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전용용기(봉투형 용기, 골판지류 상자형용기, 합성수지류 상자형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용용기가 아닌 일반 봉투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거치대(불투명한 재질의 경우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표시 등)에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합니다.

- Q) 경기도에서 8인 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데, 주사바늘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음.
 - 저희같이 소규모 시설은 의료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촉탁의가 오는 협력병원에 의료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함
- A) 의료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의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은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나, 제2호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하신 사업장이 상기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1일 평균 발생량 등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방법은 관할 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대학에서는 연구를 위하여 여러 실험동물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폐기물로 쥐를 키우는데 필요한 깔집(톱밥)과 배설물이 나오는데 현재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음
 - 소독기(autoclave)로 소독을 하면 굳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 특히 SPF(specific pathogen free) room에서 키웠다면 더더욱 감염성이 없다고 생각됨
 - 쥐를 키우면서 나오는 깔집과 배설물을 소독기로 소독한 후에도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해도 되는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의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 사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실험동물의 배설물과 배설물 등이 함유된 깔짚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소각 또는 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멸균분쇄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의 폐기물 처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할 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적법하게 설치승인을 받은 멸균분쇄시설을 통해 처리된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에 해당하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멸균만 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의료폐기물의 멸균분쇄 처리로 볼 수 없으며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27

- Q) 의료폐기물 중 전용용기 합성수지 박스를 이용하여 조직물(액상)과 생물화학폐기물의 혼합 보관이 가능한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액체상태 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조직물류폐기물 (액상)과 생물화학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Q) 인공신장실에서 사용중인 혈액오염폐기물 폐기 시 전용용기를 합성 수지류 상자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골판지류 상자용기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 제외) 및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은 합성 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Q) (질의1) 손상성 폐기물 박스의 사용 중 뚜껑을 닫는 것이 필수인지? (질의2) 병실 바닥 및 환자 침상을 닦는 일회용 걸레는 의료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 A) (질의 1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중 덮개의 개폐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나목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고 밀폐포장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병실 바닥 및 환자침상 청소로 인해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의료폐기물에 해당됩니다.

3-30

Q) 기저귀 배출하는 기관(요양원, 산후조리원등) 중 감염성이 없는 폐기물로 분류되는 경우 기저귀 연화분쇄기를 이용하여 정화조로 배출이 가능한지?

(기저귀 연화분쇄기란 해외(유럽,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폴등)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화장실에서 대소변 후화장지를 변기에 넣어 자동적으로 연화되어 정화조로 배출되는 것과같은 개념으로 기저귀를 4mm 이하로 잘게 분쇄시켜 물과 함께연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임)

- A)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분시설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5호마목에 따라 소각시설(시간당 처분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과 멸균분쇄시설(시간당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시설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의 폐기물 처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할 관청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연화분쇄기가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가능한 시설인 멸균분쇄시설 또는 소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하며,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